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12. 2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1월 8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1월 15일

라. 상정일자: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11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김형성)

가. 제안이유

-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가. 구 전략사업 총괄 추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도시국 신설(안 제4조의2)

나.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 및 통합(안 제4조의2, 제6조)

1) 공공청사 및 공공복합시설 건립 등 전담부서 신설: 미래공간과

2) 청년 지원 및 소통 강화를 위한 부서 신설: 청년정책과

3)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향상을 위한 부서 통합: 일자리경제과

다.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국 및 부서 명칭 변경(안 제4조의2, 제11조, 제14조)

1) 도시국 → 도시공간국

2) 푸른도시과 → 정원도시과

3) 감염병관리과 → 생활건강과

라.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이관

(안 제4조의2, 제5조, 제9조, 제10조, 제14조)

1) 푸른도시과: 생활환경국 → 미래도시국

2) 주차문화과: 안전교통국 → 생활환경국

3) 전산운영팀: 홍보미디어과 → 총무과

4) 민방위팀: 도시안전과 → 자치행정과

5) 정보통신팀: 홍보미디어과 → 도시안전과

6) 동물보호팀: 지역경제과 → 생활건강과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 새로운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미래도시국을 신설하여 ▲미래공간과 ▲청년정책과 ▲정원도시과를 두었으며,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요내용과 같이 업무 이관 및 국·부서 명칭을 변경함.

-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에 의하면, “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며”, 이에 따른 “행정 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”로 정하도록 되어있음.

- 아울러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이 2024년 3월 29일 개정(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함.) 및 시행됨에 따라 실·국·본부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여 국장급 기구의 설치를 자율화하고, 종전 제6조(기구설치의 일반요건)에서 “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.”는 조문에 “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라는 단서가 신설됨에 따라 3개의 과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래도시국 신설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.

- 한편, 본 조례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, 구의회 차원에서 미래도시국 담당

위원회를 어느 상임위원회로 정하여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를 개정해야할 것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43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11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구 전략사업 총괄 추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도시국 신설(안 제4조의2)

나.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 및 통합(안 제4조의2, 제6조)

1) 공공청사 및 공공복합시설 건립 등 전담부서 신설: 미래공간과

2) 청년 지원 및 소통 강화를 위한 부서 신설: 청년정책과

3)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향상을 위한 부서 통합: 일자리경제과

다.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국 및 부서 명칭 변경(안 제4조의2, 제11조, 제14조)

1) 도시국 → 도시공간국

2) 푸른도시과 → 정원도시과

3) 감염병관리과 → 생활건강과

라.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이관(안 제4조의2, 제5조, 제9조, 제10조, 제14조)

- 1) 푸른도시과: 생활환경국 → 미래도시국
- 2) 주차문화과: 안전교통국 → 생활환경국
- 3) 전산운영팀: 홍보미디어과 → 총무과
- 4) 민방위팀: 도시안전과 → 자치행정과
- 5) 정보통신팀: 홍보미디어과 → 도시안전과
- 6) 동물보호팀: 지역경제과 → 생활건강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4.10.25. ~ 11.04./1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행정국,”을 “미래도시국, 행정국,”으로, “도시국”을 “도시공간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미래도시국) ① 미래도시국에 미래공간과, 청년정책과, 정원도시과를 둔다.

② 미래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청사건립, 공공문화시설 건립,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
2. 청년정책·지원에 관한 사항
3. 공원의 조성 및 관리, 녹지보전, 조경계획·조경시설 설치 및 관리, 수변생태 복원 및 수변공원화, 정원조성 및 관리, 정원여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대외교류”를 “대외교류, 구정의 정보화, 전산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구정홍보, 구정의 정보화, 전산운영 및 정보통신”을 “구정홍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사회진흥단체 지원 총괄, 지역협치, 마을공동체 지원”을 “국민운동단체 지원, 민방위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지역경제과, 일자리정책과”를 “일자리경제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지역경제진흥”을 “일자리창출·지원, 사회적경제 지원, 지역경제진흥”으로, “전통시장 활성화, 반려동물,”을 “전통시장 활성화,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푸른도시과”를 “주차문화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주·정차 지도 단속, 교통시설 설치, 주차장에 관한 사항

제10조제1항 중 “교통행정과, 주차문화과”를 “교통행정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민방위”를 “정보통신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도시국)”을 “(도시공간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도시국”을 “도시공간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도시국장”을 “도시공간국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감염병관리과”를 “생활건강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감염병”을 “동물 관련 업무, 감염병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감염병관리과장”을 “생활건강과장”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항제1호 중 “도시국장”을 “미래도시국장”으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지역경제과장”을 “일자리경제과장”으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호 중 “지역경제과장”을 “일자리경제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지역경제과”를 “일자리경제과”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지역경제과장”을 “일자리경제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일자리경제과장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국의 설치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<u>행정국</u>, <u>기획재정국</u>, <u>복지국</u>, <u>생활환경국</u>, <u>안전교통국</u>, <u>도시국</u>을 둔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국의 설치) ----- ----- <u>미래도시국</u>, <u>행정국</u>, ----- <u>도</u> <u>시공간국</u>----</p> <p>제4조의2(미래도시국) ① <u>미래도시국</u> <u>에 미래공간과, 청년정책과, 정원도</u> <u>시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미래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</u> <u>장한다.</u></p> <p>1. <u>청사건립, 공공문화시설 건립, 공</u> <u>공복합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청년정책 ·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공원의 조성 및 관리, 녹지보전,</u> <u>조경계획 · 조경시설 설치 및 관리,</u> <u>수변생태복원 및 수변공원화, 정원</u> <u>조성 및 관리, 정원여가문화 활성</u> <u>화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5조(행정국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</u> <u>다.</u></p> <p>1. <u>청사관리, 인사, 직원능력개발 및</u> <u>후생복지, 대외교류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구정홍보, 구정의 정보화, 전산운</u> <u>영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동 행정 지원, 자원봉사, 자치회관</u></p>	<p>제5조(행정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.</p> <p>1. ----- ----- <u>대외교류, 구정의 정보</u> <u>화, 전산운영</u>-----</p> <p>2. <u>구정홍보</u>----- -----</p> <p>3. -----</p>

운영지원, 사회진흥단체 지원 총괄,
지역협치,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
사항

4. ~ 6. (생략)

제6조(기획재정국) ① 기획재정국에 기
획예산과, 지역경제과, 일자리정책
과, 재무과, 징수과, 재산세과, 지방
소득세과를 둔다.

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
장한다.

1. (생략)

2. 지역경제진흥, 유통, 전통시장 활
성화, 반려동물, 국제금융지구 활성
화 등에 관한 사항

3. 일자리창출·지원, 사회적경제 지
원, 청년정책·지원에 관한 사항

4. ~ 7. (생략)

제9조(생활환경국) ① 생활환경국에 가
로경관과, 청소과, 환경과, 푸른도시
과를 둔다.

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
장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공원의 개발 및 관리, 녹지보전,
조경계획·조경시설 및 생태계 복
원에 관한 사항

제10조(안전교통국) ① 안전교통국에
도시안전과, 도로과, 치수과, 교통행

----- 국민운동단체 지원, 민방
위-----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기획재정국) ① -----
----- 일자리경제과-----

-----.

② -----
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일자리창출·지원, 사회적경제 지
원, 지역경제진흥--- 전통시장 활
성화, -----

<삭제>

4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생활환경국) ① -----
----- 주차문화
과-----.

② -----
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주·정차 지도 단속, 교통시설 설
치, 주차장에 관한 사항

제10조(안전교통국) ① -----
----- 교통행

정과, 주차문화과를 둔다.

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종합방재계획 수립, 재난 예방, 재난 복구대책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
2. ~ 4. (생략)
5. 주·정차 지도 단속, 교통시설 설치, 주차장에 관한 사항

제11조(도시국) ① 도시국에 주택과, 도시계획과, 주거사업과, 건축과, 부동산정보과를 둔다.

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5. (생략)

제14조(보건소) 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, 감염병관리과, 건강증진과, 의약과를 둔다.

②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(생략)
2. 감염병 예방·관리, 소독업 허가 및 시설관리,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, 예방접종 업무 및 국가예방접종 사업, 운동·영양·금연·절주에 관한 사항
3. 4. (생략)

정과-----.

② -----
--.

1. -----
----- 정보통신-----
--
2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11조(도시공간국) ① 도시공간국-----

-----.

② 도시공간국장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보건소) ① -----
- 생활건강과-----
-----.

② -----
-.

1. (현행과 같음)
2. 동물 관련 업무, 감염병 -----

3. 4. (현행과 같음)